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후에너지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주요 개정사항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고시에 대한 위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제1조(목적)의 개정
2. 제3조(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제한 내용) 및 제3조의2(그림·사진 등 시각적 표현의 제한) 신설 및 제5조(재검토기한) 개정
3.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부여를 위한 부칙 신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 제한 내용)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 향균, 향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방균(防菌), 방충(防蟲), 방의(防蟻), 방미(防黴), 멸균, 무균, 제균, 소독, 락스, 유해생물 또는 그 번식의 차단·방지·프리·박멸·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나.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암시하는 표현: 유해생물의 명칭(학명을 포함한다) 또는 유해생물의 명칭과 함께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한 표현

다. 특정 용도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방오(防汚, 선박 및 해양구조물만 해당), 방제(防除), 방역(防疫)

라. 그 밖에 유해생물의 제거·사멸·억제 또는 제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표현이 제조·수입·판매자의 상호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표현을 제품의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의 증식(증가, 성장, 번식) 억제·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목적으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의 증식(증가, 성장, 번식) 억제·예방 등

제3조의2(그림·사진 등 시각적 표현의 제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에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을 암시하는 그림·사진·도안 등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유통 중인 제품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제1호 가목의 락스 및 나목에 유해생물의 명칭(학명 포함)을 표시·광고한 제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